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62호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463호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정선군 조례 제2464호 정선군 군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19
- 정선군 조례 제2465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2
- 정선군 조례 제2466호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25
- 정선군 조례 제2467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정선군 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정선군 조례 제2469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정선군 조례 제2470호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52
- 정선군 조례 제2471호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55
- 정선군 조례 제2472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정선군 조례 제2473호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 정선군 조례 제2474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76
- 정선군 조례 제2475호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80
- 정선군 조례 제2476호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82
- 정선군 조례 제2477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주개정조례 ..... 84
- 정선군 조례 제2478호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86
- 정선군 조례 제2479호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89
- 정선군 조례 제2480호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94
- 정선군 조례 제2481호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9
- 정선군 조례 제2482호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 102

○ 정선군 조례 제2483호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23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65호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27

# 조 례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62호

###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

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군수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역대표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소속 실·과·단·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

피할 수 있다.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거나 심의 중인 사항과 군수가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조정하고,
-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
-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0조)
- 기타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 수정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63호

##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자치센터”라 함은”을 “주민자치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체”라 함은 관할구역안에”를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를 “해당 읍· 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개소에 한하여”를 “1개소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여가기능”을 “문화여가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능중 당해”를 “기능중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하여 지정된 자중”을 “따라 지정된 사람 중”으로,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의”로, “징수액중”을 “징수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자나”를 “사람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사용료등의”를 “다른 사용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인이내”를 “1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범위”를 “징수 범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경과후 20일이내”를 “경과 후 20일 이내”로,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무원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로,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등)”을 “(이용 등)”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이내”를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제2항 중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를 “다른 정기회의 개최 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전단 중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3인이내”를 “3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를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로, “후보자”를 “후보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계 각층”을 “각계각층”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를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 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방법에 의하여”를 각각 “방법으로”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좌하며 위원장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는 때”를 “없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간동안”을 “시간 동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중 간사 1인”을 “위원 중 간사 1명”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퇴를 원하는”을 “사임을 원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운영취지”를 “운영 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해촉”을 “위촉해제”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월1회”를 “월마다 한 차례”로, “때와”를 “경우와”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일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구성후”를 “구성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예산의 범위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자치센터 설치는 1개소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 6. (생략)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생략)

③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

----- 각 호의 -----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등) ①-----  
-----  
-----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  
-----  
-----.

② (현행과 같음)

③----- 1개소만 -----  
-----  
-----.

제5조(기능) ①-----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  
----- 문화여가 기능

3. ~ 6. (현행과 같음)

②----- 기능 중 해당 -----  
-----  
-----.

③----- 규정에도 -----  
-----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운영) ①·② (생 략)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따라 지정된 사람 중 ----- 제10조제2항에 ----- 징수액 중 -----.

④----- 해당 ----- 아닌 사람 ----- 사람이나 -----.

⑤----- 다른 사용료 등의 -----.

⑥-----

등 10인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10  
명 이내-----  
-----.

제9조(강사) ① (생 략)

제9조(강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  
----- 사람  
을-----.

제10조(사용료등)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②제1항 중-----  
-----  
-----  
-----  
-----.

③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③----- 징수 범위-----  
-----  
----- 범위-----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  
-----  
-----  
-----  
----- 경과 후 20일 이  
내----- 방법에 따  
라-----  
-----.

⑦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⑦ -----  
-----  
공무원 중에서 -----  
-----  
----- 위원 중에서 -----  
-----  
-----  
-----.

제11조(이용등) ① (생략)

제11조(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  
----- 사람은 -----  
-----.

③ 자치센터의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  
-----  
----- 마련하여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때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  
-----  
-----  
-----.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

제13조(수당) ① -----  
----- 범위 -----

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생략)

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 5. (생략)

6.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  
②-----  
----- 범위-----  
-----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

제16조(기능) ①----- 각호의 사항을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  
-----  
-----  
-----

제17조(구성 등) ①-----

-----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 3명 이내-----  
----- 해당 -----  
-----

②-----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  
----- 종사하는 사람 -----

1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

----- 후보자 중-----

----- 사람을 -----

1. 해당 -----

----- 그 밖에 -----

2. ----- 따라 -----

③-----

----- 각계  
각층-----

----- 1 이상-----

④-----

----- 사람으로 -----.

⑤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 또는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  
-----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  
----- 사람으로서 -----  
----- 사람을 -----.

⑥-----  
-----  
----- 1개월이내 ----- 방법으로 -----  
----- 새로 -----  
----- 방법 -----  
----- 으로 -----.

⑦-----  
-----  
----- 2년 -----  
----- 한 차례만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총괄한다.

②-----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없을 경우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간 동안 -----  
-----  
-----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해촉) ①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생략)

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해촉한 경우 그 후임자로 위

제19조(간사) ①-----  
-- 위원 중 간사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  
- 경우에만 -----  
----- 위촉해제-----.

1. 해당 -----
  2. -----  
-- 6개월 이상 -----
  3. ----- 사임을 위한 -----
  4. ----- 운영 취지-----
5. (현행과 같음)
- ②----- 따라 -----  
----- 위촉

촉된 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경우 그 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는 읍·면장이 통지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⑤ (생략)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위원과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해제-----  
-----  
----- 남은 임기로 -----.

제21조(회의) ①-----  
-----  
----- 월마다 한 차례 -----  
-----  
----- 경우와 ----- 1  
이상-----  
-----.

②-----  
-----  
----- 3일-----  
-----.  
----- 구성 후 -----  
-----.

③위원회-----  
----- 회의를 시작-----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 등) -----  
-----  
-----.  
----- 예산의 범위-----  
-----.

제24조(시행규칙 등) --- 조례의 시행에 -----  
-----  
-----  
-----.

개 정 이 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안 제17조)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64호

###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군민의 날(6월 1일)
3. 그 밖에 정선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7.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8. 국기선양을 위해 지정하는 시범마을 및 시범거리 담당기관·단체
  9.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 등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3조)
  -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 정선군민의 날(6월 1일), 그 밖에 정선군의회 의결로 정한 날
- 국기선양 사업 명시(안 제4조)
  -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예산 지원 및 국기 보급사업 명시(안 제5조)
  -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국기선양 사업추진 예산지원
  - 무상 국기보급(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국기선양 실적 우수자(기관·단체) 포상(안 제6조)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65호

###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강릉보훈지청장

제2조제2항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8. (생략)</p> <p>&lt;신설&gt;</p> <p>9. <u>그밖에</u>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p> <p>③ ~ ⑥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2조(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강릉보훈지청장</u></p> <p>10. <u>그 밖에</u>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예산지원) <u>군수는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수당 등) <u>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제7조 (시행규칙) 이 <u>조례 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 (시행규칙)---- <u>조례의 시행에</u> ----- ----- -----.</p>

**개 정 이 유**

- 2015. 1. 6일자로 상위법(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지청장 포함.)
- 또한, 통합방위대책 관련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에 예산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 통합방위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수당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강릉보훈지청장” 포함(안 제2조)
- 통합방위대책 관련 지원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
- 통합방위회의 참석위원 수당 등 지급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66호

###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버스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범위(안 제3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 지원 등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67호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나머지 1명은 심의회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관계공무원
-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이 된다.

⑨ 심의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제21조의2제2항 및 제40조의2에 따른 위탁기간의 갱신결정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및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및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 재산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21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한 때의 미개간지상태인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때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인 토지가격으로 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이미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구성·운영 중인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사용료·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27조 단서 관련)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적용 대부료율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1.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퍼센트) × 50 / 10,00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0.8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50퍼센트) × 30 / 10,0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0.7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100퍼센트) × 15 / 10,0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0.5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0퍼센트) × 5 / 10,000
500퍼센트이상	0.40퍼센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16조에 따른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li> <li>2.</li> <li>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li> <li>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li> <li>5. 제21조의2제2항 및 제40조의2에 따른 위탁기간의 갱신결정</li> <li>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li> <li>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li> <li>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li> </ol>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6조에 따른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나머지 1명은 심의회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관계공무원</li> <li>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p>

<신 설>

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 이 된다.

⑨심의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심의회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 4. 제21조의2제2항 및 제40조의2에 따른 위탁기간의 갱신결정
-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3.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및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 4.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및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 재산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신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 -----  
-----  
-----  
-----  
-----  
-----

⑤ -----  
-----  
-- 법 제27조제6항 -----  
-----  
-----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한 때의 미개간지상태인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때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인 토지가격으로 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이미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  
-----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 3. (생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다만,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제4호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6. (생략)

----- 100분의 5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201  
2년 12월 31일 -----  
-----  
-----  
-----  
-----  
-----.

5. 2012년 12월 31일 -----  
-----  
-----  
-----  
-----  
-----.

6. (현행과 같음)

### 개 정 이 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기능 강화(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심의회 구성을 명확화 하여 통일성, 공정성 확보 등 심의회 기능 강화
  - 7 ~ 15명 이하 구성(위원장 부군수), 민간위원 과반수, 임기 2년
  - 심의사항 정비(면적 및 대장가액)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안 제21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수정  
(법 제27조제4항 → 법 제27조제6항)
- 「초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부요율 조정(안 제27조)
  - 초지조성 허가 대부료를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로 함.
-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안 제33조)
  - 공유대부료 증가율 조정(100분의 10 → 100분의 5)
-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범위 조정(안 제39조)
  - 2003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68호

##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육비 등”이라 함은 “양육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군민”을 “정선군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기준일”이라 함은 “지원기준일”이란으로, “출생신고일”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원기간”이라 함은 “지원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격상실”이라 함은 “자격상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양육비 등 지원”을 “양육비등”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한다.

③ 전입세대의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한정하고,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 기타”를 “허위 또는 그 밖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한 12인”을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여성청소년과장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6조제6항 중 “하고”를 “하되,”로 하고, “있으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있으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를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제8항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운영위원회”로, “개의(開議)”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를 “그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지원액에서 당해”를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지원액에서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입세대 및 입양세대는 지원기준일부터 지원기간의 남은 개월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지원기준일로부터”를 “출생신고일로부터”로, “지원기준일로부터”를 “지원기준일로부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생아”를 “군 관내 출생아”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 --.</p>
<p>1. "양육비 등"이라함은 출산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p>	<p>1. "양육비등"이란 ----- ----- -----.</p>
<p>2. "지원대상"이란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군민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첫째아, 둘째아 중 한명이라도 사망시에는 지원기준일 당시의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한다.</p>	<p>2. ----- 정 선군민 -----. ----- -----.</p>
<p>3. "지원기준일"이라 함은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신고일을 말한다.</p>	<p>3. "지원기준일"이란 ----- 출 ----- 출</p>

<단서 신설>

4. "지원기간"이라 함은 양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5. "자격상실"이라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전출하여 주소지를 달리하게 될 때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6. "자격회복"이라 함은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이후 다시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자격회복신청을 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원의 확보·운영) ①재원은 당해 연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정선군양육비등지원시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재원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지원기간"이란 -----  
-----  
-----.

5. "자격상실"이란 -----  
-----  
-----  
-----  
-----.

<삭 제>

제3조(재원의 확보·운영) ① -----  
- 해당 연도 -----  
-----  
-----.

② -----



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 략)
- 4. 지원대상 자격회복신청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군수가 양육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생 략)
- 2. 주민생활지원과장
- 3. ~ 6. (생 략)

⑤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단서 신설>

----- 범위에서 -----  
-----.

제6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

- 1. ~ 3. (현행과 같음)
- <삭 제>

5. 그 밖에 -----  
-----  
-----

③ -----  
----- 1명을 포함한 12명  
-----  
-----.

④ -----  
-----  
-----  
-----  
-----.

- 1. (현행과 같음)
- 2. 여성청소년과장
- 3. ~ 6. (현행과 같음)

⑤ 운영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⑥ -----  
하되, ----- 있으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⑦ (생략)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① 자녀 1명 당 지원액은 연간 3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운영위원회 ----- 회의  
----- 를 시작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그  
----- 업무를 총괄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삭 제>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① -----  
----- 범위에서 -----  
-----  
-----  
-----

② (생 략)

③최초지원액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지원액에서 당해 분기에 지급할 지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①지원기간은 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 까지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군 관내를 떠나 주소지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그 때부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생 략)

제13조(자격회복) ①자격상실자가 반드시 친권자와 함께 다시 거주할 목적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읍·면장이 주민등록법상에 준하는 사실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목적 임을 확인하였을 때에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지원대상자는 군수에게 지원대상자자격회복신청(이하 "자격회복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자격회복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부의 심의를 거친 후 자격회복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지원액에서 해당 -----

④ 전입세대 및 입양세대는 지원기준일부터 지원기간의 남은 개월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① ----- 출생신고일부터 ----- 지원기준일부터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회복신청을 한 친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결정 통지를 받은 친권자 또는 지원대상자는 그 때부터 양육비 등의 수급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의2(출산육아용품 등 지급) ①군수는 양육비 외에 필수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출생아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양육비지원신청서 양식 등 기타 제반 필요한 일반적 행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출산육아용품 등 지급) ① -----  
-----  
----- 군  
관내 출생아 -----  
-----  
-----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 정 이 유

- 정선군에서 출생 등록된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아 양육비 지원이 되므로 전입가구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 초래
- 인구 증가 시책으로써 전입가구 자녀도 똑같이 혜택을 부여하여 정선군 인구늘리기에 기여
- 지원대상 한정은 지나친 규제 조항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변경: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준일 개정(안 제2조제3호)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요건 및 대상 개정(안 제4조)
  - 군 관내 출생자녀 한정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 전입, 입양의 경우 셋째아 지원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제4항)
- 전입 및 입양세대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신설(안 제 11조제4항)
- 자격회복 조항 삭제(안 제13조제1항 ~ 제2항)
- 출산육아용품 지급대상 명확화(안 제13조의2제1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69호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군민으로 본다.
- ⑥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제1호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당사자의 배우자

제10조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묘를 말한다)의 사용자격은 사망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lt;신설&gt;</p> <p>⑥ &lt;신설&gt;</p>	<p>제7조(사용자격) ① ----- -----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u>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군민으로 본다.</u></p> <p>⑥ <u>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p>	<p>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 ----- ----- -----</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p>

<p>2. (생략)</p> <p>&lt;신설&gt;</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외자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50% 감면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p> <p>2. (생략)</p> <p>④ ~ ⑤ (생략)</p>	<p><u>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u></p> <p>2. (현행과 같음)</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당사자의 배우자</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p> <p>2.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

개 정 이 유

-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80%에 달하는 등 화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선군 장사시설(봉안시설)의 사용자격을 확대하여, 실제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사시설 사용자격 확대(안 제7조)
  - 공설봉안시설 사용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선군민으로 규정
  -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봉안료 및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0호

###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정선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정선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알콜·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여성긴급전화 1366신고 피해 대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7.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8.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20.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해마다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 위기상황 사유 판단에 지자체장 재량권 강화로 정선군의 특성을 고려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정선군의 상황에 맞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 함.(안 제3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 함.(안 제4조)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1호

##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 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 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로복지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 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 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정 이 유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등
-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를 15명 이내로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위촉직 위원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함.)
- 위촉위원 임기 및 위촉해제, 위원장 등 직무 규정(안 제4 ~ 6조, 11조)
- 위원회 회의 규정(안 제7조)
- 회의록, 수당 등 지급 근거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위임(안 제12조)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2호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설치에 관하여”를 “설치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의2 중 “[별표 1]과”를 “별표 1과”로 한다.

제2조의3 중 “군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재직기간”을 “재임기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때에 이를”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개의회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 중 “[별표 2]와”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5조의 규정”을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거주자는 50퍼센트 감면한다.

제12조의3제2항 후단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 1. 스카이워크 전망대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포함)	비 고
입장료	2,000원	1,000원	

## 2. 짚와이어 시설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비 고
시설사용료	40,000원			스카이워크 전망대 포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u></p>	<p><u>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시행령</u> ----- ----- ----- <u>설치에</u> ----- ----- <u>정함</u> ----- -----.</p>
<p>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 ----- <u>따른다.</u> -----</p>
<p>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 ----- ----- <u>별표 1과</u> -----.</p>
<p>제2조의3(관리사무소) <u>군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u></p>	<p>제2조의3(관리사무소) <u>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u> ----- ----- -----.</p>
<p>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 환경산림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축산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p>	<p>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p>

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생략)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  
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  
촉 하는 자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  
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전  
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4항  
제1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  
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  
과 제4조제4항제2호·제3호의 특별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  
- 각 호의 사람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이 -----.

1. (현행과 같음)

2. -----  
-----  
----- 사람으로서 -----  
하는 사람

3. -----  
-----  
-----  
위촉하는 사람

⑤ -----  
-----  
-- 한정하여 -----.  
-----  
-----.

제5조(임기) -----

-----  
----- 재임기간 -----

----- 하되, 한 차례만 -----  
-----.

제8조(회의)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 3.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 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

-----  
----- 때에 -----.

② 위원회 -----  
----- 회의를 시작하고 -----  
-----.

③ -----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3.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수당 등) -----  
-----  
-----  
----- 범위에서 -----  
-----  
-----.

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

② "어린이"는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③ "청소년"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④ "성인"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생략)

②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는 50%감면한다.(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③ (생략)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별표 2와 ----- . -

-----

-----

---- 제25조 -----

-----

-----

----- .

② -----

----- 사람을 ----- .

③ -----

----- 사람을 -----

- .

④ -----

- 사람을 ----- .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②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의 지원) -----

-- 범위에서 -----

-----

----- .

제17조(시행규칙) ----- 시

행에 -----

----- .

**개 정 이 유**

○ 민간운영 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국내 주요 스카이워크 및 군립공원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관광객 중심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별표 2]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하(안 제12조의2)
  -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인하
    - 성인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
    - 청소년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
    - 어린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
-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안 제12조의3)
  - 주민등록상 폐광지역(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거주자는 50퍼센트 감면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조문 수정 보완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3호

###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를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정선군”으로, “푸른정선21”을 “지방의제21”로,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를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푸른정선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군”을 “"지방의제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한책무”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발전을 위해”를 “지역발전을 위하여”로, “협의회”를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하여야”를 “참여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협의회의기능과구성”을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푸른정선21”을 “지방의제2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푸른정선21”을 “지방의제21”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푸른정선21”을 “지방의제21”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협의회운영”을 “협의회 운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3. 협의회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1항 중 “심의 의결”을 “심의·의결”로,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매년”을 “해마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직무수행상”을 “직무수행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을 “인정되는 경우 그”로 한다.

제20조 중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참여하여야”를 “참여해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의 제28장과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u>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u>푸른정선21</u>을 실천하기 위하여 <u>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푸른정선21</u>"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 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p> <p>2. "<u>지속가능한 발전</u>"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정선군</u> ----- ----- ----- <u>지방의제21</u> ----- ----- <u>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u> ----- ----- ----- <u>정함</u> ----- -----.</p> <p>제3조(정의) ----- ----- -----.</p> <p>1. "<u>지방의제21</u>"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 ----- ----- ----- ----- -----.</p> <p>2. ----- <u>이란</u> ----- ----- ----- -----</p>

제2장 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한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회의기능과구성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  
 -----  
 ----- 지역발전을 위하여 -----  
 -----  
 -----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지원해야 --  
 -----.

② -----  
 -----  
 -----  
 -----  
 -----  
 -----  
 -----  
 -----  
반영해야 -----.

③ -----  
 -----  
 -----  
 -----  
 ----- 공표  
해야 -----.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  
 -----  
 -----  
 -----  
 -----  
 -----  
 -----  
 -----  
 -- 노력해야 -----.

② -----  
 -----  
 ----- 참여해야 -----  
 -----.

제3장 협회의 기능과 구성



<신 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 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여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2.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협의회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  
----- 심의·의결  
----- 처리해야  
-----  
----- 통보해야 -----.

② ----- 제1항에 따라 -----  
-----  
-----  
-----  
----- 통보해야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해마다 -----  
-----  
-----  
-----  
----- 제출  
해야 -----.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  
----- 직무수행에 -----  
-----  
-----  
-----  
-----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6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 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 1. 2. (생략)
-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응해야  
 -----.

제15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6조(경비의 지원) -----  
 -----  
 -----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  
 -----  
 ----- 각 호의 -----  
 -----.

- 1. 2. (현행과 같음)
- ② -----  
 -----  
 -----  
 ----- 정산해야 -----  
 -----.

제18조(사무의 위탁) -----  
 -----

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정되  
는 경우 그 -----  
-----  
-----.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  
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  
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  
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  
다.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  
-----  
-----  
----- 및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참여해야  
-----  
----- 시행해야 -----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 정 이 유

-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통하여 단체명을 기존 <푸른정선 21실천협의회>에서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를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푸른정선21”을 “지방의제21”로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6조)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20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보완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4호

##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군민”을 “폐광지역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군민”을 “해당하는 폐광지역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군민: 군 관내”를 “폐광지역 주민: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민”을 “폐광지역 주민”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화 암 동 굴			야 영 장		캠 핑 캐 라 반			모 노 레 일			카 트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노지 사용료	데크 사용료	3인용	4인용	6인용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1인승	2인승
일 반	개인	5,000	3,500	2,000	10,000	20,000	· 성수기 10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00,000 - 평일 60,000	· 성수기 12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20,000 - 평일 70,000	· 성수기 15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50,000 - 평일 80,000	3,000	2,000	1,500	12,000	17,000
	단체	4,500	3,000	1,500										
폐광지역 주민, 명예군민, 자매결연 도시민, 정 선군 숙박관광객	개인	3,500	2,500	1,500										
	단체	3,000	2,000	1,000										
투표자	개인	3,000	2,000	800										
	단체	2,500	1,500	500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중복감면은 불가함.

※ 성수기: 7월 ~ 8월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감면) ① <u>군 관내에서 거주하는</u> 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 관광객에게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군민</u>: <u>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u> 사람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③ <u>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에 대한</u>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감액된 요금으로 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7조의2(감면) ① <u>폐광지역 주민</u>-----</p> <p>-----</p> <p>-----</p> <p>-----</p> <p>-----</p> <p>-----</p> <p>-----</p> <p>②----- <u>해당하는 폐광지역 주민</u>-----</p> <p>-----</p> <p>-----</p> <p>1. <u>폐광지역주민</u>: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p> <p>2. ~ 5. (현행과 같음)</p> <p>③ <u>폐광지역 주민</u>-----</p> <p>-----</p> <p>-----</p> <p>-----</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2015년 7월 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안건인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적용> 이행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 간 화합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폐광지역(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주민은 현지 주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료 감면(안 제7조의2)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5호

###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을 “폐광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군민”을 “폐광지역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군민”을 “폐광지역 주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감면) ① (생 략)</p> <p>②<u>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u>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u>군민</u>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p> <p>1. (생 략)</p> <p>2. 그 밖에 <u>군민</u>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p>	<p>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u>폐광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u></p> <p>-----</p> <p>-- 50퍼센트-----.</p> <p>----- <u>폐광지역 주민</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폐광지역 주민</u>-----</p> <p>-----</p>

개 정 이 유

- 2015년 7월 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안건인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적용> 이행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 간 화합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폐광지역(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주민은 현지 주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료 감면(안 제11조제2항)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6호

##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군 소재”를 “폐광지역(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을 말한다) 소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및 군민(군)을 “및 폐광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입장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u>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u></p> <p>8.·9. (생략)</p> <p>10.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u>및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u> &gt;</p>	<p>제7조(입장의 특례) -----</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폐광지역(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을 말한다) 소재</u> -----</p> <p>-----</p> <p>8.·9. (현행과 같음)</p> <p>10. -----</p> <p>-----</p> <p>---- <u>및 폐광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u></p>

개 정 이 유

- 2015년 7월 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안건인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적용> 이행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 간 화합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폐광지역(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주민은 현지 주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료 감면(안 제7조)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7호

###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민(군)을 “폐광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으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민”을 “폐광지역 주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p> <p>② <u>군민</u>(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u>50%</u>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p> <p>1. (생 략)</p> <p>2. 그 밖에 <u>군민</u>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p>	<p>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폐광지역 주민</u>(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u>영월군</u>----- ----- <u>50퍼센트</u>-----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폐광지역 주민</u>----- -----</p>

개 정 이 유

- 2015년 7월 9일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안건인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적용> 이행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 간 화합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폐광지역(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주민은 현지 주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료 감면(안 제7조제2항)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8호

###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 및 지원하여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서예, 국악, 건축, 사진,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민속행사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정선군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④ 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 및 지원하여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대상사업(안 제5조)
- 군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8조)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79호

##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또는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군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 ①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등 관계기관·단체는 협의회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
- 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등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기업단위노동조합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5. 노사관련 군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정선군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제 정 이 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은 지원근거가 요구되어 노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 및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정선군 노사민정협회의 목적과 책무, 소요경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위원의 위촉, 임기, 성실운영규정 등을 마련함.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 노동단체 지원대상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범위 등의 근거를 명시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80호

###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또는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

동 등을 개최·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제7조(복지·기반시설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
2.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제8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군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박람회,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
2. 군, 도, 국가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추진사업
3. 군내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군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군, 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제9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연수
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4.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
5.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
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9.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10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군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군내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
4. 군내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5. 군내 농공단지,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6. 군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7. 군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 군수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국내외투자기업에 임대할 경우의 임대료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군, 도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복지·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정 이 유

-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내 중소기업의 창업·판로·복지·수출·기술개발·기업지원 단체 교류활동 등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3.24. 공포, 2014.11.29.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

## 주 요 내 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군의 책무(안 제4조)
  - 창업·판로·수출·기술개발·기업지원 단체 활동 등의 관련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안 제5조~10조)
  - 군내 중소기업의 창업·판로·복지·수출·기술개발·기업지원 단체 교류활동 등과 관련된 세부사업 명시 및 사업의 시책수립·시행
- 보조금 지원(안 제11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3조)
  - 본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 가능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 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81호

##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출연금)”을“(출연금등의 지원)”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재단의 기본재산에 한하여”를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에 한정하여”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
- 2. 지역주민 공동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lt;신 설&gt;</p> <p>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의 계승·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p> <p>2. 지역주민 공동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6조(시행규칙) ----- 시행에 -----.</p>
---	---

개 정 이 유

-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순화·정비
- 기본재산인 출연금 이외에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항을 신설.

주 요 내 용

-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 신설 (안 제2조4항)
  -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 정선의 계승·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
  - 지역주민 공동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82호

##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건축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선군 건축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요청하는 자는 그 건축허가 신청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до서를 붙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4조의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및 영 별표 1제21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재해예방

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 제55조·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 ⑤ 영 제6조제2항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 중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2006년 10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한 때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의 증축
  5.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인 경우 법 제56조·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때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나. 종교시설
  - 다. 판매시설
  - 라. 운수시설 및 여객자동차시설
  -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3.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변경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자격·임명·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 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영 제5조의5 제1항제4호에 따라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라. 제3조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마.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 또는 그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위원은 위원 중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제15조에서 같다)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된다.

###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의 운영자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이 되고, 회의 진행은 협의회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진행한다.
-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 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

계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목조, 합석 등으로 구성된 간이구조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문화행사·체육행사·학술행사·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축사, 농·어업용 창고,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축사, 농업용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2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말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군 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 효력상실, 업무정지, 그 밖에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 까지, 제7의3부터 제7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대지안의 조경 등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자연녹지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 또는 시장 내 건축하는 건축물
3.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6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구 분	심는밀도 (제곱미터당)	상록수의 비율 (퍼센트)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60% 낙엽수: 4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작은 나무)	0.4본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한다.

③ 기존수목(원시림을 포함한다)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2배까지 인정한다.

제2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은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식수대. 다만, 군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문화행사 및 관측활동이란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행위를 말한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창고,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 제6장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3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

## 3.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
-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9장 보칙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집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골재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운반시설: 컨베이어벨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1】

##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8조 관련)

건축 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원
	기 타	9,4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원
	기 타	20,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4,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0,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0,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별표 2】

## 업무대행 수수료(제24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금액	대가기준의 40% 금액	대가기준의 50%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금액	대가기준의 60% 금액	대가기준의 75%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금액	대가기준의 80% 금액	대가기준의 100%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금액	대가기준의 120% 금액	대가기준의 150%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금액	대가기준의 160% 금액	대가기준의 200%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금액	대가기준의 200% 금액	대가기준의 250%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금액	대가기준의 240% 금액	대가기준의 300%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승인 현장조사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0.5평방미터(m<sup>2</sup>) 이상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li> <li>●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li> </ul>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li> <li>●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li> </ul>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 3미터 이상</li> <li>●연립주택 : 2미터 이상</li> <li>●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li> </ul>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li> <li>●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li> </ul>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 3미터 이상</li> <li>●연립주택 : 1.5미터 이상</li> <li>●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li> </ul>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신청서

※제2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건축주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주 소	( ☎ )			
	지 목			지 적	m <sup>2</sup>
	위 치			지 역	
기 존 건축물 규 모	위 치				
	건 축 면 적	m <sup>2</sup>	연 면 적	m <sup>2</sup>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율	%	층 수
	건 축 년 도		소 유 자		
건축물 규 모	건 축 면 적	m <sup>2</sup>	연 면 적	m <sup>2</sup>	
	건 폐 율	%	21) 용적율	%	
	층 수	지상 ( )층, 지하( )층			
	구 조			공 사 종 류	

정선군건축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법의 완화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경, 원경사진 각1부</li> <li>2. 건축물대장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li> <li>3.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li> <li>4.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li> </ol>
------------------	--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 이해 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사진(근경 · 원경)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일
근거 법규	○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 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건축법 제5조)		
※ 작성방법 - 건축물의 규모는 신축(증축)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 공사의 종류는 신축·증축·대수선·개축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완화받고자하는 규정은 건축법의 규정을 기재한다. -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제16조제5항관련)		담당자	담당	위원장	
민원명					
개최일시	. . .	개최장소			
민원인	주소	성명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		
관련부서 및 기관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 합니다.					
부서별 (담당)	관련법령	심 의 의 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	참 석 자		
			직	성명	서명
총합 의견					

## 개 정 이 유

- 「건축법」(법률 제12968호, 2015.01.06.)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384호, 2015.7.7)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공동주택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기준 적용 완화 조정(안 제3조)
- 정선군 건축조례 개정전 대지안의 공지 적용된 기존건축물에 대한 수직 증축 및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마련(안 제4조)
- 건축위원회 심의사항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세부규정 정비·보완(안 제6조 내지 안 제15조)
- 공사 중단된 건축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규모 조정(안 제17조)
- 가설건축물 중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야외흡연실 설치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반영(안 제19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 대상 조정(안 제23조)
- 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 조정(안 제24조)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 실시대상 건축물 신설(안 제25조)
- 건축지도원의 불분명한 자격사항을 명문화함(안 제26조)
-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적용기준 조정(안 제27조)
- 공개공지 설치기준 조정(안 제29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규모에 따른 적용기준 신설(안 제32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조정(안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2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1.5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시 높이의 2분의 1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시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226회 정선군의회(2015. 12. 3.)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83호

###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선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이하 “군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치) 군립 의료기관은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에 둔다.

제4조(의료기관 구분 및 명칭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과 요양병원을 같은 부지 및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대학교 의료법인

2.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3.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② 군립 의료기관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한다.

③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설계,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재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즉시 군수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⑤ 군립 의료기관의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시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립 의료기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료수가) ① 의료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규정)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2. 임원자의 정원
3.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근무체제 등
4. 그 밖에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①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정선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군립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 의료기관의 예산편성·결산 및 사업계획
2. 군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의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환자관리 및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군립 의료기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1회 이상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군립 의료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정 이유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군립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군립 의료기관의 운영·관리를 대학교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함(안 제5조)
-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수탁자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예산편성, 결산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안 제10조)
- 수탁자는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군수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 규 칙

2015년도 제10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65호

###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을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를 “결정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신생아”를 “자녀”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을 “지원기준일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0일”을 “지원기준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를 “접수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

①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직업	
②	정선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③	출 생 자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장소	
④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⑤	지원금액				
⑥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읍·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확인) 2. 거주사실 확인	확인결과	직·성명  (서명)	관련서류  ※ 사본 또는 출력본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u>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                      ----- 정함 -----                      -----.</p>
<p>제2조(지원액 공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u>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u>에 군 홈페이지, 군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p>	<p>제2조(지원액 공고) -----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                      -----.</p>
<p>제3조(지원신청 등) ① (생 략)                      ② 양육비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u>신생아의 부모가 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u>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양육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녀 -----                      ----- 지원기준 -----                      일부터 1년 -----                      -----.</p>
<p>③ <u>60일 이내</u>에 양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정한다.</p>	<p>③ <u>지원기준일</u>부터 1년 -----                      -----</p>



개 정 이 유

- 양육비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소급적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규칙 제명 변경: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양육비 지원신청 기한 연장(안 제3조제2항)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 “지원기준일부터 1년”으로 변경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